

2026년 전세임대주택 입주자모집 관련 Q&A

I 입주자 신청

1 입주 신청은 어디에서 할 수 있나요?

- 모집 공고문을 참조하여 신청기간 내 경남개발공사 1층 주거복지T/F(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용지로 244)로 방문 접수하여야 합니다.

2 타 지역(부산, 경북 등) 거주자도 신청이 가능한가요?

- 금번 공고는 입주자모집 공고일(2026. 05. 06.) 기준 경상남도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소득·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분에 한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3 청약통장이 반드시 있어야 하나요?

- 청약통장을 사용하는 것은 아니나, 신혼·신생아Ⅱ 유형 신청자 동일 순위 입주 희망자 간 경합이 있는 경우, 청약저축 등의 납입 횟수(인정회차 기준)에 따라 가점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청약통장 보유 시 유리할 수 있으며, 청약통장은 신청자 명의의 통장만을 인정합니다.

4 모집공고일 현재 혼인신고하지 않은 예비 신혼부부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 입주일 전까지 혼인신고 예정인 예비 신혼부부에 한하여 입주신청이 가능합니다. (입주 전일까지 혼인관계증명서를 제출)

5 예비 신혼부부인데, 같이 살고 있는 부모님이 주택을 소유하신 경우에도 신청 가능한가요?

- 예비 신혼부부는 '세대구성확인서'의 세대구성원을 대상으로 주택 소유여부, 소득·자산을 검증합니다. 이에 따라 부모님의 주택 소유여부는 관계없습니다. 다만, '세대구성확인서'의 세대 구성원 중 유주택자인 부모님이 포함될 경우 부적격자로 처리됩니다.

7 배우자가 외국인인데 신청 가능한가요?

- 배우자가 외국인 등록이 완료된 경우 신청 가능하며, 배우자가 비거주 재외국민이거나 미등록 외국인인 경우 그와 혼인관계에 있는 내국인의 임대주택 신청은 불가합니다.
- 임대주택 공급 원칙 및 다른 신청자와의 형평성 유지를 위하여 배우자의 소득·자산 조회가 불가능한 경우에 청약이 제한됩니다.

8 신청서에 자격사항을 잘못 기재한 경우 불이익이 있나요?

- 본인의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입주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입주 신청 전 입주 자격, 소득, 자산, 무주택 여부, 가구원 수 등을 정확히 확인하여 작성 오류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9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거주 중이더라도 신청 가능한가요?

-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현재 거주 중인 공공임대주택에 ① 계약자(임차인)의 세대원으로 거주 중인 경우에는 입주 시 세대분리 후 신규 임대주택으로 전입신고를 하여야 하며, ② 계약자(임차인)로 거주 중인 경우에는 입주 시까지 기존 공공임대주택사업자에게 공공임대주택을 명도하고 신규 임대주택으로 주민등록 전입하여야 합니다.

10 계약체결 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요건을 충족해야 하나요?

- 입주 대상으로 선정된 자는 계약 시까지 입주 자격을 유지하여야 하므로,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전세임대주택을 신청하였더라도 계약 이전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계약체결이 불가합니다. 또한, 전세임대주택 거주기간 중 주택을 소유할 경우 재계약 체결이 불가합니다.

11 재혼가정인데, 전혼기간도 혼인기간 7년에 포함되나요?

- 혼인기간은 혼인(재혼) 신고일 기준이므로 재혼가정의 경우 전혼기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재혼가정은 현재 혼인기간만으로 7년 이내인지 확인하면 됩니다.

11 미성년자도 신청할 수 있나요?

- 미성년자(만 19세 미만)는 공급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단,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본 공고의 신청자격을 충족하는 자는 공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 자녀가 있는 미성년 세대주(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자녀가 등재되어 있어야 함)
 - 부 또는 모가 외국인인 경우, 한부모가족인 미성년 자녀(내국인) 세대주
- ※ 단, 임대차계약 체결 시 법정대리인 동의 또는 대리 필요

12 현재 거주 중인 주택도 신청 가능한가요?

- 지원 요건을 충족할 경우 현재 거주 중인 주택도 신청 가능합니다.

II 자격 조회

13 입주 대상자의 자격 조회는 어떻게 하나요?

- 입주 대상자 선정 시 해당 세대의 소득·자산·무주택 여부 등은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공적자료를 조회합니다.

14 자격 조회 범위(대상) 및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 소득산정, 토지·자동차 등 총 자산 조회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체를 대상으로 합니다.

15 소득, 가구원 및 자녀 수 산정 시 태아도 포함되나요?

- 태아도 포함되며, 병원 직인이 날인된 임신 진단서 또는 임신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6 소득 산정 시 어떤 소득이 포함되나요?

-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및 기타소득이 모두 포함되며, 해당 세대의 소득은 소득 항목별 소득 자료 제공기관에 별도 문의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17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자산보유사실확인서는 무엇인가요?

- 자격검증을 위해 입주 신청자를 포함한(세대 구성원 전원)의 금융자산 조회가 필요하며, 이에 따라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및 "자산보유사실확인서"를 서명 또는 날인하여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8 신청인 또는 배우자에게 전혼자녀가 있을 경우 가구원 수에 포함되나요?

- 신청인의 전혼자녀가 모집공고일 기준 신청인 또는 배우자와 동일 등본에 있는 경우이거나, 배우자의 전혼자녀가 모집공고일 기준 신청인과 동일 등본에 있는 경우 가구원 수에 포함되며 자격검증 대상이 됩니다.

19 수급자인 경우에는 소득·자산을 검증하지 않나요?

- 증명서로 증명할 수 있는 수급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인 경우는 소득·자산 검증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예비 신혼부부는 '세대구성확인서'의 입주 시 구성될 세대 구성원을 대상으로 주택 소유 여부, 소득 및 자산을 검증합니다.

Ⅲ 동일순위 경합 시 배점 부여

20 신청서상 기재한 배점과 실제 제출서류 간 상이한 경우 어떻게 하나요?

- 신청자가 기재한 점수에 부합하는 증빙자료가 제출되었는지 확인하고, 증빙이 불일치하거나 미제출된 경우 해당 점수를 조정 또는 삭제하며, 그 결과 부적격 처리될 수 있습니다.
※ 신청자가 기재한 점수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점수 부여가 불가능합니다.

21 장애인 등록 여부 적용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 신청자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여야 합니다. 단, 신청자의 배우자가 지적장애인·정신장애인 및 보건복지부고시(장애정도판정기준)에 따라 장애의 정도가 심한 뇌병변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 배우자 장애인 등록도 인정됩니다.

Ⅳ 계약 및 입주

22 직계 존·비속의 주택을 전세임대주택으로 지원받을 수 있나요?

-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 소유의 주택은 전세임대주택으로 지원받을 수 없으며, 가족관계증명서로 주택소유자를 확인합니다.